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입찰참가 제한기간
가. 건설업자가 법 제132조를 위반한 경우 1) 건설업자가 법 제132조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이하 “부정제공”이라 한다)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건설업자가 법 제132조를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3) 건설업자가 법 제132조를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건설업자가 법 제132조를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1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13조의3제1항	공사비의 100분의 20 공사비의 100분의 15 공사비의 100분의 10 공사비의 100분의 5	2년 2년 1년 1년
나. 건설업자가 법 제132조의 2를 위반하여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를 위반한 경우 1)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를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를 위반하여 부정	법 제1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13조의3제1항	 공사비의 100분의 20 공사비의 100분의	 2년 2년

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3)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제132조를 위반하여 부정 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제132조를 위반하여 부정 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15 공 사 비 의 1 0 0 분 의 10 공 사 비 의 100분의 5	1년 1년
---	--	---------------------